정책자료

공사 낙찰률 상향조정

재정경제부, 정부계약제도 개선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8일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동전보다 2.8~10% 상향조정토록 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10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존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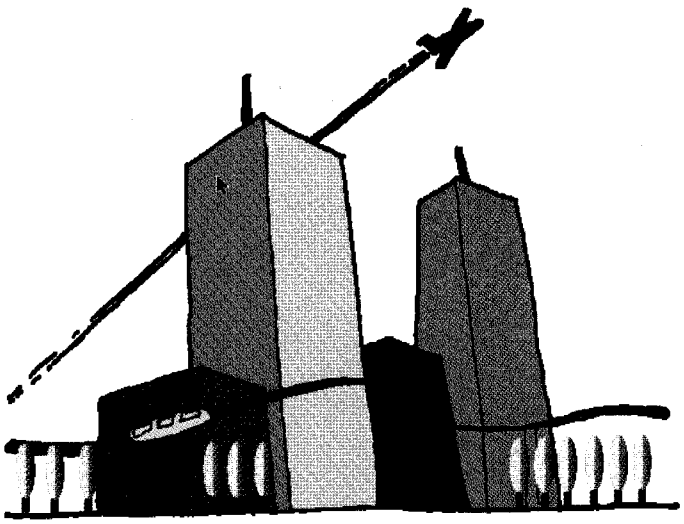

공사규모별 낙찰 하한율은 1천억원 이상의 경우 현행과 같이 73%로 하고 1천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78%(+5%), 3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83%(+10%), 10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85.5%(+5%),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86.7%(+3.7%), 10억원 미만은 87.8%(+2.8%)로 결정되었다.이 같은 낙찰률 상향조정은 4월 2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나 조달청 등 발주기관들이 기관특성에 맞는 입찰참가자격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적격심사기준상 발주기관이 시공업체의 하도급관리 등 공사관리의 적정성에 따라 추가로 2~5% 수준의 낙찰률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낙찰 하한율이 추가 인상의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신규와 기존 중소건설업체간의 수주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적격심사기준에서 시공실적을 완전 삭제, 입찰가격의 비중을 종전 80점에서 90점으로 확대하고 경영상태를 10점으로 축소한 대신에 기존업체의 수주일감을 일정 수준 보전하기 위해 특별신뢰도 항목을 신설하여 경영상태가 불량하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일정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여겨졌던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폐지하는 대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존업체

라 할지라도 시공실적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토록 "특별신인도"를 신설했으며, 경영상태 비중도 종전 12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고 경영상태 항목에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만을 유지, 다소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존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토록 했으나 이 기준은 신규 등록업체의 양산을 초래할 소지를 안고 있다.

또 1천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적격심사낙찰제 대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를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증금률도 현행 계약금액의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공공조달에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입찰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은 분기별 발주계획을 일간 건설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하고 발주기관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집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찰특혜 여부를 감시토록 했다.

주요개선내용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

①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입찰(국내 입찰대상)

현 행	개 정 안
○입찰서는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 ○예외적으로 우편입찰 허용	○좌동 ○국내 입찰대상에 한해 전자입찰도 허용 ※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등 개정

②분기별 발주계획 인터넷 공고

현 행	개 정 안
(신설)	○경쟁입찰로 조달한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해 연도초에 분기별 발주계획(물량, 예산액 등)을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고 ※국가계약법시행령(제96조) 개정

③정부계약집행심의회 설치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정부계약심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 각 발주기관이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등 설정시 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국가계약법시행령(제95조) 개정

④정부조달 관련 금품 제공자 제재강화

현 행	개 정 안
○입찰 ·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 6월~1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부정당업자 제재)	○1~2년으로 상향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6 별표) 개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 보완

①1천억원 이상 초대형공사부터 최저가낙찰제 전환

현 행	개 정 안
○ 1억원 이상 모든 공사 : 적격심사낙찰제 시행	○1천억원 이상⇒최저가낙찰제 시행(2001년부터) ※국가계약법시행령(제52조) 개정

②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

현 행	개 정 안
○다음 3가지 보증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 ①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배 납부 ③이행보증서(P-Bond) 제출 ○이행보증서의 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30%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1천억원 이상 공사)는 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 ○그 밖의 공사도 필요시 이행보증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계약금액의 40%로 상향 ※국가계약법시행령(제52조) 개정

③적격심사시 낙찰 하한율 상향조정

현 행	개 정 안
○낙찰 하한율 -100억원 이상 : 예정가격의 73% -100~50억원 : 예정가격의 80.5% -50억원~10억원 : 예정가격의 83% -10억원 미만 : 예정가격의 85%	○낙찰 하한율 -1천억원 이상 : 현행과 동일(73%) -1천억원~300억원 : 78%(+5) -300억원~100억원 : 83%(+10) -100억원~50억원 : 85.5%(+5) -50억원~10억원 : 86.7%(+3.7) -10억원 미만 : 87.8%(+2.8)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

④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적격심사기준 대폭 완화

현 행	개 정 안
○당해공사 수행능력 : 20점 -시공경험 : 8점 -경영상태 : 12점 · 최근년도 부채비율 (4) · 최근년도 유동비율 (4) ·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률 (2) · 최근년도 총자본 회전율 (2) -신인도 ·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만료 후 그 제재기간 해당 기간 중에 있는 자 : △2 ○입찰자격 : 80점 [적용대상]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	○당해공사 수행능력 : 10점 -시공경험 : 삭제 -경영상태 : 10점 · 최근년도 부채비율 (5) · 최근년도 유동비율 (5) ·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률 (삭제) · 최근년도 총자본 회전율 (삭제) -특별신인도 · 최근 3년간 당해 공사금액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자 : +2 ○입찰가격 : 90점 [적용대상공사] ○건설공사 : 10억원 미만 ○전기 · 정보통신 · 소방공사 : 3억원 미만 ○전문 · 설비공사 등 : 1억원 미만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

⑤수의계약대상공사(1억원 미만) 계약 하한율 설정

현 행	개 정 안
(신설)	○수의계약대상공사(1억원미만)의 계약상대자선정은 1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의낙찰 하한율(87.8%) 이상인 자로 함. ※회계예규 "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

⑥수의계약사유에서 긴급한 수해복구 포함

현 행	개 정 안
[수의계약사유]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	○비상재해에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가 포함됨을 명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개정